

광운대학교 기술료 분배 지침

제정일 : 2020. 03. 01.

제1조(목적) 광운대학교 기술료 분배 지침은 광운대학교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광운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분배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술료 분배기준) ① 발명의 실시허락,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지식재산 비용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한다.

1. 발명자 : 50% 이상
2. 기여자 : 5% 이상
3. 연구개발재투자 : 5% 이상
4. 산학협력단 사업화 경비(운영비) : 15%

② 제1항 제2호의 기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.

1. 기술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일 경우,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담당자를 기여자로 한다.
2. 기술료 및 계약조건 협상에 산학협력단 직원이 직접적인 관여를 하였을 경우,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담당자를 기여자로 한다.
3.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발명자(기술이전 책임자)가 지정하는 자를 기여자로 한다.
4. 기여자는 발명자와 중복될 수 없다.

③ 제1항 제3호의 연구개발재투자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.

1. 매년 1월 ~ 12월까지 회수한 연구개발재투자 비용은 차년도에 직전 년도 기술이전 실적 우수 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로 지급한다.
2. 우수 연구자 선정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범위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른다.

부 칙

(1) 본 지침은 2020년 3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기술이전 계약부터 시행한다.